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01-23

대 구 고 등 법 원

제 1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	2017누477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원고, 피항소인	A
피고, 항소인	1. [redacted]군수
	2. [redacted]군수
	3. [redacted]시장
	4. [redacted]시장
제 1 심 판 결	대구지방법원 2017. 2. 10. 선고 2016구합737 판결
변 론 종 결	2017. 10. 27.
판 결 선 고	2017. 11. 24.

주 문

1.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1. 청구취지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01-23

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(각 가산세 포함)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하고,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[이미 관련사건에서 원고와 같은 국유임산물 낙찰자들이 취득한 나무는 취득세 부과대상인 '입목'이 아니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.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2192(원고 승소) → 서울고등법원 16누81804(피고 항소기각) → 대법원 17두52368(피고 상고기각)],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,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성수제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01-23

판사 김태현

판사 곽병수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01-23

별지

목 록

(단위: 원)

취득세 등 재부과내역 목록

순번	피고 (처분청)	재부과처분일 (과세대상)	원고	취득세 (본세)	무신고 가산세	납부불성실가산세	농특세 (본세)	납부불성실가산세
1	[redacted]군수	2016.12.12		3,823,000	764,600	228,230	382,300	22,820
2	[redacted]군수	2016.12.12		1,781,000	356,200	109,530	178,100	10,950
3	[redacted]군수	2016.12.12		5,523,000	1,104,600	339,660	552,300	33,960
4	[redacted]군수	2016.12.12		623,000	124,600	163,350	62,300	16,330
5	[redacted]군수	2016.12.12		643,000	128,600	40,310	64,300	4,030
6	[redacted]군수	2017.1.3		3,883,000	776,600	146,770	388,300	14,670
7	[redacted]군수	2017.1.3		1,575,600	315,120	438,640	157,560	43,860
8	[redacted]군수	2017.1.3		610,000	122,000	163,230	61,000	16,320
9	[redacted]시장	2016.12.12		1,281,000	256,200	119,510	128,100	11,950
10	[redacted]시장	2016.9.21		1,815,400	363,080	592,540	181,540	59,250
11	[redacted]시장	2016.9.21		1,663,000	332,600	377,160	166,300	37,710
12	[redacted]시장	2016.9.21		6,611,000	1,322,200	805,210	661,100	80,520
13	[redacted]시장	2016.9.21		12,000	2,400	1,050	1,200	100

끝.